

'97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

의안 번호	610
----------	-----

제출년월일 : 1997.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도시영세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용자를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는 대출자들에게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 용자지원 규모 : 133,500천원
- 용자대상자 명단 및 대상가구별 지원액 : 별첨
- 대출금리 : 연리 3%
- 상환조건 : 2년 만기 일시 상환

3. 용자방법

- 용자업무 취급기관 :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
- 용자계약의 체결
 - 계약 당사자 :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안산지점
 - 보 증 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 금융 신용보증서
 - 안산시장은 용자대상자의 총체적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

4. 관련 법령

-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지침 (건설 교통부) : 별첨
 - 건교부 주정 58520 - 83 ('97. 1. 16)호 및 경기도 주택 58520 - 280('97. 1. 30)호
-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협약서(안) : 별첨
- 지방재정법 제10조 : 별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별첨

'97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

순 위	성 명	주 소	행정동	신청금액 (단위:만원)
1	이귀성	본오동 851 - 3 (402호)	본오1동	750
2	유재석	본오동 893 - 7 (102호)	본오1동	700
3	고광성	본오동 919 - 3 (103호)	본오1동	750
4	김종철	사동 1306 - 2	사1동	750
5	장애숙	본오동 859 - 2	본오1동	500
6	이경석	팔곡2동 472 - 18 경우빌라 A - 301	본오1동	500
7	이기원	본오동 954 - 14	본오1동	750
8	김현섭	수암동 266	안산동	750
9	강명길	선부동 1144 - 2	선부3동	750
10	김동명	본오동 841 - 12 (101호)	본오1동	750
11	이경애	선부동 1085 한양@ 130 - 1602	선부3동	750
12	한상진	월피동 519 - 13	월피동	700
13	이경주	본오동 851 - 8 (301호)	본오1동	750
14	김권빈	사동 1306 - 2	사1동	700
15	오용인	본오동 960 - 203	본오1동	750
16	엄방자	사동 1505 본오@ 201 - 1402	사2동	500
17	최강진	사동 1335 - 3	사1동	750
18	배충수	건건동 922 - 10 벽성빌라 E - 302	반월동	750
19	최신열	본오동 869 - 16	본오1동	750
	소 계			13,350
예 비 자				
20	김용이	고잔동 584 코알라 E - 306	고잔1동	750
21	이종필	건건동 574 - 1 동원연립 2층 6호	반월동	750
22	박언규	본오동 913 - 14	본오1동	750
23	윤정순	본오동 929 - 4	본오1동	700
24	민중기	월피동 486 - 3 (204호)	월피동	750
25	조 숙	월피동 521 - 11	월피동	700
26	김기분	초지동 593 광운연립 나 - 303	초지동	750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

1. 목 적

-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 자금을 융자지원

2. 용자규모 및 용자조건

- 용자규모 : 13억원
- 용자조건
 - 융자금액 : 세대당 750만원 이내
 - 이 율 : 연리 3%
 - 용자기간 : 2년이내 정기상환 (전세제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용자대상지역 및 시별 배정액

- 대상지역
 -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지역

○ 해당시별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 별	배정희망금액	배 정 액	비 율
계	4,234,000	1,300,000	30.7%
수 원 시	225,000	69,000	31
성 남 시	920,000	277,000	30
안 양 시	525,000	158,000	30
부 천 시	405,000	123,000	30
광 명 시	600,000	182,500	30
동 두 천 시	22,500	22,500	100
안 산 시	451,500	137,000	30
고 양 시	417,000	127,000	30
구 리 시	98,000	31,000	32
시 흥 시	187,500	58,000	31
용 인 시	382,500	115,000	30

- ※ 1. '96 용자실적 및 '97 배정희망액을 감안하여 추가배정할 계획임.
 2. '96년도에 배정된 금액중 용자가 미실행되어 남은 잔액은 '97년도로 이월 되지 않으니 '96년도에 용자받지 않은 세대가 '97년도에 용자받는 경우에는 '97년도 배정금액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함.

4. 용자 대상자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 구체적인 용자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5. 대출취급기관 : 주택은행

6. 용자방식

- 해당시장은 시·구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주택은행 (각 지역본부)에 통보
- 주택은행은 영세민 전세자금 운용을 위한 특별계정(여신부관리)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세민에게 용자
- 대손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

7.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선정

- 용자신청접수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용자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후 관할 시·구청에 용자대상자 추천을 요청
- 대상자 추천 : 관할 시·구청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를 동사무소에 송부
- 대상자 통보 : 거주지 동장은 확정된 용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 및 주택 은행에 통보

○ 용자실행

- 전세계약 체결 :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계약 체결
※ 전세금 반환시 가옥주가 용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
- 용자신청 : 용자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 은행장에 용자 신청

8. 기타사항

- 당해년도 미용자된 자급에 대하여 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다음
년도 자급배정을 받는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주택은행장은 용자실적에 대하여 월별, 지역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5
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바람.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안)

안산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장(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안산시 거주 영세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용자 또는 용자에 관련된 보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사항을 협약 한다.

제 1 조 (계정설치 및 용자한도)

- ① 전세자금 용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②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을"이 용자할수 있는 한도는 세대당 750만원으로 한다.

제 2 조 (용자대상자 선정등) 용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 3 조 (용자한도및 이율) 용자한도는 세대당 750만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제 4 조 (상환기관) 용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용자 등) ①"갑"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용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있는 "을"의 점포(출장소 제외)에서 용자 받도록 조치 한다.

②"을"은 용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③"갑"이 선정된 용자 대상자에게 용자취급하는 기간은 '97. 12. 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조 (용자금 반환의 특약 등) ① "을"은 용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용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 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 부터 용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용자금의 범위는 "을"의 용자원금에 용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 7 조 (사후관리) ① "갑", "을"은 용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용자취급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②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용자금 및 이자 납입상황과 주거실태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하"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을"은 "갑"으로 부터 용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손실보존) ① "갑"은 제1조제2항의 용자제한 범위내의 "을"의 용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을"이 채무관계자에게 용자원금 또는 이자의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갑"의 관할동직원과 "을"의 용자취급접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득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보전청구권 1개월간 유보한다.
 3. 제 2호의 유보기간(1개월)내 용지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호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 2항 제 1호의 보존할 금액은 제 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용지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 ④ "을"이 손실을 보존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 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분기의 익월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후에도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 9 조 (기 타) ①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타 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와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협약 체결을 입증하고 이득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시 2통을 작성 서명날인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7. 3. .

(갑) 안 산 시 장 (인)

(을) 한국주택은행안산지점장 (인)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第6條 (教育·科學 및 體育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法에서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사항 또는 教育費特別會計에 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教育監”으로, “內務部長官”은 “教育部長官”으로, “內務部”는 “教育部”로, “地方財政”은 “地方教育財政”으로 각각 본다.

(全文改正 94·12·22)

第7條 (歲出의 財源) 地方自治團體의 歲出은 地方債의 歲入을 그 財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債로 充당할 수 있다.

第8條 (地方債의 발행) ①地方債의 발행, 元金의 償還, 利子의 支拂, 證券에 관한 事務節次 및 事務取扱機關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地方債중 證券發行의 方法에 의한 地方債(이하 “地方債證券”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商法 第479條·第484條·第485條 및 第4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商法의 規定중 “社債”는 “地方債證券”으로, “社債權者”는 “地方債權者”로, “債券”은 “證券”으로 보고, 第479條중 “記名社債”는 “記名地方債證券”으로, “社債原簿”는 “地方債證券原簿”로, “會社”는 “地方自治團體”로 각각 본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組合에 의한 地方債) 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組合이 그 規約에 의하여 당해 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에 貸付하기 위하여 地方債를 起債하는 경우에 그 起債한 地方債에 대하여는 당해 組合과 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가 그 償還과 利子의 支給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第10條 (保證債務負擔行爲) 地方自治法 第1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債務負擔行爲의 승인과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一時借入金)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計上된 범위안의 支出을 위하여 一時借入金이 필요한 때에는 그 限度額을 會計年度마다 會計別로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의 收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福券發行) ①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福社向上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과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財源에 充당하기 위하여 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종류, 발행 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福券의 當籤金의 消滅時效는 支給日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동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第6條 (教育·科學 및 體育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사항 또는 教育費特別會計에 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教育監”으로, “內務部長官”은 “教育部長官”으로, “內務部”는 “教育部”로, “地方財政”은 “地方教育財政”으로 각각 본다.

[全文改正 94·12·22]

第7條 (歲出의 財源) 地方自治團體의 歲出은 地方債의 歲入을 그 財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債로 充당할 수 있다.

第8條 (地方債의 발행) ①地方債의 발행, 元金의 償還, 利子의 支拂, 證券에 관한 事務節次 및 事務取扱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第1項의 地方債중 證券發行의 方法에 의한 地方債(이하 “地方債證券”이라 한다)의 發行에 관하여는 商法 第479條·第484條·第485條 및 第4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商法의 規定중 “社債”는 “地方債證券”으로, “社債權者”는 “地方債權者”로, “債券”은 “證券”으로 보고, 第479條중 “記名社債”는 “記名地方債證券”으로, “社債原簿”는 “地方債證券原簿”로, “會社”는 “地方自治團體”로 각각 본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組合에 의한 地方債) 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組合이 그 規約에 의하여 당해 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에 貸付하기 위하여 地方債를 起債하는 경우에 그 起債한 地方債에 대하여는 당해 組合과 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가 그 償還과 利子의 支給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第10條 (保證債務負擔行爲) 地方自治法 第1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債務負擔行爲의 승인과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條 (一時借入金)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計上된 범위안의 支出을 위하여 一時借入金이 필요한 때에는 그 限度額을 會計年度마다 會計別로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一時借入金は 당해 會計年度의 收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驅券發行등) ①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福祉向上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과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財源에 充당하기 위하여 驅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종류, 發行 금액, 發行조건을 定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驅券의 當籤金의 消滅時效는 支給日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驅券의 發行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지방재정법시행령

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 (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3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